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

검 토 보 고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78호)

2025.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황 충 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5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5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10
3. 주요 항목별 검토	14
(1) 목적	14
(2)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의 주요 개념 정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	16
(3)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19
(4) 반려동물사료의 영양기준·표시관리 및 위해성 평가체계 정비 ····	21
(5) 반려동물사료 위해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회수·검사 제도화	25
(6) 반려동물사료 위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체계 마련 ···	30
(7)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33
(8) 소비자 피해 보호 및 지원 등	35
(9)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	38
(10) 벌칙 및 과태료	4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는 공중위생 및 소비자 보호 차원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2024년 상반기에는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함. 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동물 집단폐사 사고는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료 이외에 생활조건은 서로 상이한 반려동물이 같은 시기 같은 증상으로 집단 폐사하는 현상으로 미루어볼 때,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리체계, 대동물과 차별되는 영양학적 기준 마련이 미흡함이 드러났음.

반려동물사료를 규율하는 현행법으로는 「사료관리법」이 있으나 「사료관리법」은 축산업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대동물 가축용 사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려동물사료의 전문적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집단적 위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대응 근거와 생산·판매 이력 추적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평상시에도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 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반려문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기존 「사료관리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책무로 하며, 사업자는 안전한 사료 생산·판매와 국가·지자체 시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권장 규격 설정·위해성평가·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안전기준을 연구·제도화하고,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마.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응 권한과 원인 규명을 위한 회수·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불응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안 제9조~제15조, 제21조, 제22조).
- 바.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생산·유통 정보 뿐

아니라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8조).

사. 권한·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0조)

IV. 검토의견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최근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복지와 건강,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전국적으로 고양이의 급성 신경·근육병증이 집단적으로 발병한 사례가 발생하여, 그 중 일부 고양이가 폐사한 바 있음.¹⁾ 정부는 당시 시중에 유통 중이던 사료 53개 제품과 고양이 사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 결과에서는 사료와 폐사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음.

다만,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확보 절차, 유통의 투명성, 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 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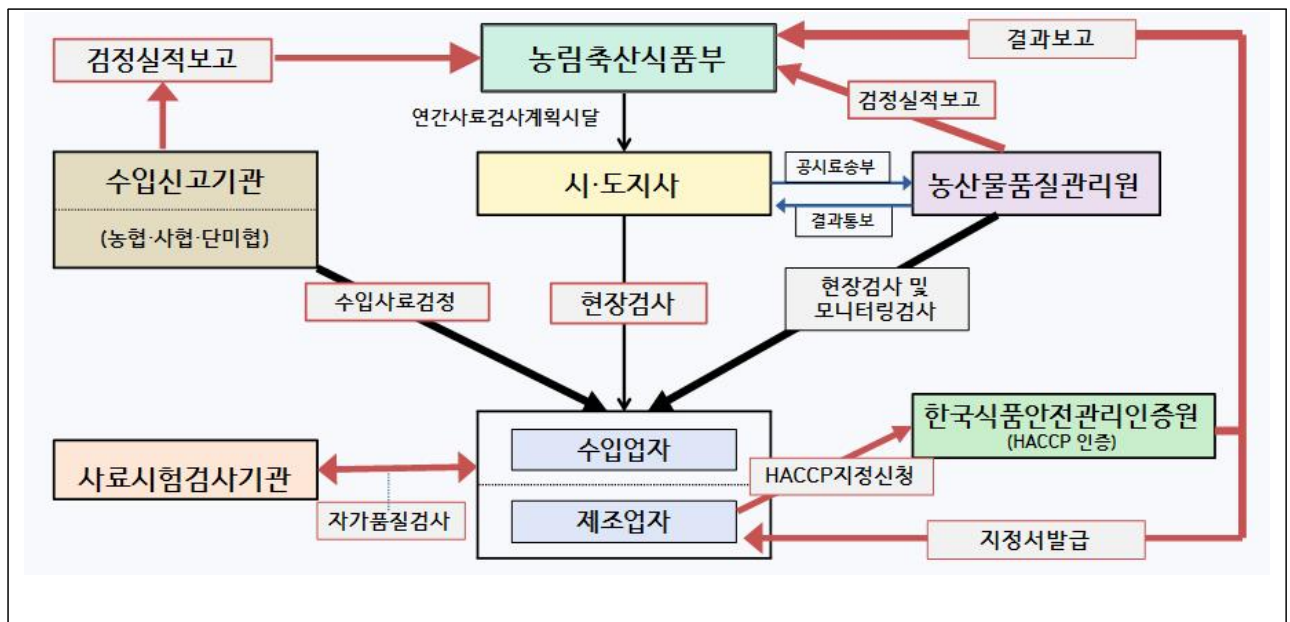
현재 반려동물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전반에 대해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를 받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조업자는 일정한 시설

1) 2024년 3~4월 대한민국 전역에서 원인 불명의 고양이 급성·근육병증이 집단 발병한 사건으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4월 20일까지 145가구의 고양이 236마리가 급성 신경·근육 병증을 보였고, 이 중 8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보고됨.

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사료의 종류·성분 등에 대해 성분 등록을 받아야 하며,²⁾ ▲제조단계에서 수입·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및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수입단계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입사료검정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단계에서도 시·도 사료검사기관이 유통 사료를 점검하고 있음.

< 사료관리법의 사료검정 및 안전 확보 체계도 >



2) 「사료관리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해 가축의 생산성 개선과 고품질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반려동물의 생리적 특성, 종별 영양요구, 소비자 중심의 정보 제공, 신속한 회수 및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축용 사료와 비교할 때 반려동물 사료는 유통 경로, 소비자 특성, 품목 다양성, 기대 수준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상이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가축용 사료와 달리 별도의 법률 체계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반려동물사료와 가축용 사료 비교

구 분	반려동물사료	가축용사료
목적	·반려동물의 건강 목적 ·반려동물이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과 기호 및 영양을 공급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자재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전제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해 가축 생산성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통과정	·일반 소비재와 같이 마트, 슈퍼마켓, 펫샵, 동물병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 경로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축산계열업체, 배합사료공장, 대리점 등 한정된 유통 경로로 판매됨
소비자	·1,500만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및 구성원	·제한된 축산농가
품목 및 형태	·10,0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품목과 형태로 지속 증가	·축종 · 사육목적 · 성장단계별 단순한 형태 및 종류
소비자 기대	·안전성, 영양, 위생, 다양한 기호, 품질(유기농/유전자 변형원료 사용 여부 등) 등을 우선한 반려동물과 보호자 중심	·가축 생산성, 효율성, 단가, 편의성 중시
표기	·식품과 유사한 정보 및 안내	·주요 성분 및 영양소 함량 정보 안내
소비자 관여도	·매우 높음(적극적) → 민원	·낮음(비적극적)
고용효과	·다품목, 소포장, 소량생산 등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높음	·소품목, 자동화된 대량 생산
위생 · 방역	·개별 가정 내에서 양육하며, 식품과 유사한 다양한 단백질 원료 및 가공 형태가 존재하므로 산업 동물과는 다른 기준 적용 필요	·방역은 축산업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료 관리 기본 요소(구제역, AI, BSE 등 동물전염병 등)

* 출처 : 사료 관련 법령 체계화 방안 연구, (사)한국식품포럼(2022)

특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457건으로, 이물 혼입·변질(15.9%), 표시광고 불일치(5.9%), 급여 후 이상증상(10.0%)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보고되고 있음³⁾. 또한, 최근 생식(raw food) 사료의 확산으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대장균 등) 오염,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2023년 8월 국내 유통 중이던 생식 사료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어 긴급 회수·폐기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발의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은 축산용 사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사료의 생산·수입·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독립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제정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며,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품질 수준 향상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일부 내용은 현행 「사료관리법」과 하위법령 및 고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2022년 12월

3)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사료 유통 및 표시 실태조사’ 보고서(2022)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한국소비자원 접수 반려동물사료 관련 상담 1,457건 중 ❶ 제품 내 이물 발견·변질 235건(15.9%), ❷ 배송 지연·미배송 188건(12.8%), ❸ 유통기한 경과 임박 159건(10.8%), ❹ 사료 급여 후 이상증상 148건(10.0%), ❺ 표시광고(가격, 중량, 성분, 사은품 등)와 상이 제품 87건(5.9%), ❻ 사료 성분 문의 43건(2.9%)로 안전·품질 및 표시제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4)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음.

개정을 통해 사료 표시의무 확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공장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등 제도가 보완된 바 있음.⁵⁾

따라서 법률로 상향 규정할 필요성, 기존 제도와 체계 정합성, 그리고 제도 운용의 혼선 발생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9113호(2022.12.27.공포, 2023.12.28. 시행)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총 22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기존 「사료관리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집단적 위해 및 소비자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정안은 별도의 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법률의 목적, 용어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제1조~제4조).

둘째,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권장규격 설정, 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 표시기준과 금지행위, 긴급대응 체계, 생산·판매 금지, 회수명령, 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및 검안·해부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5조~제15조).

셋째, 정보 공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소비자 피해보호 및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6조~제18조).

넷째, 보칙으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법률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제19조~제22조).

부칙에서는 이 법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법 체계의 완비성을 위해 제정안을 총 4장으로 구분하여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제1장 총칙」,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2장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제3장 지원 및 피해구제」,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4장 보칙」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의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하에서는 제정안 입법 시 검토되어야 할 구체적인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제정안과 사료관리법 비교]

제정안	「사료관리법」
총 칙	제1항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제4조(적용 배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5조(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권장규격) 제7조(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 제8조(표시기준 및 금지행위) 제9조(긴급대응) 제10조(생산·판매 등의 금지) 제11조(회수 명령) 제12조(검사 명령) 제13조(추적조사) 제14조(역학조사) 제15조(검안·해부 명령)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지원 및 피해구제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16조(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제17조(소비자 및 사업자 지원) 제18조(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조의2 제조업 등록의 제한 제9조 제조업의 승계 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 제11조 사료의 공정 등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 제13조의2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4조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5조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보급
-	제4장 사료검사 등
-	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0조 자가품질검사 제20조의2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3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 사료검사 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3조 사료의 재검사 제24조 폐기 등의 조치 제24조의2 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처분
보칙 등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제20조(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제21조(벌칙) 제22조(과태료)	제27조 감독 제27조의2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8조 수수료 등 제29조 증표의 제시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3. 주요항목별 검토

(1) 목적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료관리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집단적 위해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기존 「사료관리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집단적 위해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의 목적규정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와 반려동물 사료 관련 집단적 위해 사례 발생에 대응하여, 현행 「사료관리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입법 취지와 부합함.

또한,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추적·회수 및 피해 구제 등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공중위생의 향상과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의 “기존 「사료관리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집단

적 위해 및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함”은 정책적 설명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입법 명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동물사료의 소비자를 보호함” 등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의 주요 개념 정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정책적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다른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반려동물사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중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반려동물사료의 생산·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려동물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양질의 안전한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사료 안전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반려동물사료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와 관련된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다른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운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게 급여하기 위해 제조된 사료’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사료관리법」 제2조는 ‘사료’를 가축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법으로 이미 반려동물 사료도 규율하고 있음.⁶⁾ 따라서 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사료관리법」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의 ‘사업자를 반려동물사료의 생산·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사료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업자를 규율하게 됨.

따라서 법안 심사시 규율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료관리법」과 같이 규율 대상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제4조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사료관리법」 등과의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6)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하므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반려동물사료 관련 사항은 이미 「사료관리법」 체계 내에서도 일부 규율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른다” 등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법률 간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표시기준, 중대한 안전사고 대응 및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①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반려동물사료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과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반려동물사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수의사로서 반려동물의 질병 또는 사료의 안전 및 영양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반려동물사료 관련 사업자, 일반 소비자단체 또는 반려동물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 대표, 동물보호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반려동물사료 정책, 질병 및 영양관리, 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사, 사업자 및 소비자·동물보호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이러한 자문기구의 설치에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 중 소비자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추천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비율이나 전문성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향후 위원회 구성 시 편중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⁷⁾

또한,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규정한 ‘반려동물사료의 권장규격과 표시기준’은 현행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등과 그 하위 규정에서 이미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는 사항⁸⁾으로, 법률간 기능 중복 또는 제도 운영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전문성 등 자격요건 및 자문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특히, 반려동물사료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대응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필수적인바, 수의학, 반려동물 영양, 식품위생 등 실질적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8) 사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등
(행정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사료검사기준,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4) 반려동물사료의 영양기준·표시관리 및 위해성 평가체계 정비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사료관리법」상의 기준·규격 외에 권장규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 특성에 맞춘 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를 제도화하며,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6조(권장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 외에 반려동물의 급식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영양 또는 안전 관리에 관한 권장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정된 사료공정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료공정이 설정되거나 변경되기 전까지 임시의 권장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③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 현행 사료공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성분·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료공정의 개정 또는 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권장규격의 범위 및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영양기준 연구 및 위해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는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인자에 관한 연구 및 시험·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시험·분석은 소속기관, 정부출연기관, 「사료관리법」 등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대학, 수의학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기준, 권장규격 및 표시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8조(표시기준 및 금지행위) ① 반려동물사료의 표시기준에 관하여는 「사료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건강 상태, 영양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적인 표시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의 표시사항에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해당 사항의 과학적 타당성과 소비자 오인 방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객관적 근거나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표시하는 행위
2.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객관적 자료 없이 우수성을 강조하는 행위
4. 그 밖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표시를 하는 행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표시의 정정·삭제 또는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표시기준의 세부사항, 기능성 표시의 허용 기준 및 절차, 점검 및 행정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사료관리법」⁹⁾은 가축사료와 반려동물사료를 포괄하는 법률

9)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

로서, 기준·규격 설정(제11조), 성분등록 관리(제12조), 표시사항(제13조), 위해요소 관리(제16조)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는 기술 변화 및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제8호·제9호·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조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하기 위하여 수시로 정비되고 있음.

제정안은 「사료관리법」의 기준·규격외의 별도로 반려동물의 급식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영양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권장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를 구체적인 정책현장에 반영하는 데에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먼저, 사료의 제조공정, 성분 등록, 위해요소 관리 등은 「사료관리법」과 하위 고시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규정은 입법 효율성과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또한, 위해성 인자에 관한 연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연구 인프라와 예산·인력 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와 관련해서도, 현행 「사료관리법」 제13조 등을 통해¹⁰⁾ 이미 반려동물의 특성과 소비자 알권리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10) 「사료관리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반려동물사료 위해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회수·검사 제도화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생산·판매 금지·회수·검사명령 및 위해성 평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 정 안
제9조(긴급대응)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대응의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조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판매 등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사료가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해 우려가 제기되고 그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종류의 공표 2. 해당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의 종류 및 정도의 공표 3.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 대처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생산·판매 등의 금지 또는 회수명령 5.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 6. 그 밖에 위해방지 및 확산 차단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한 경우, 그 위반 사실과 관련 사업자의 명칭, 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관계 행정기관·유관단체 및 일반 국민에게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소비자는 긴급대응방안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 등의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판매 등이 금지된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를 거칠 경우 위해 확산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조치의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해성 평가, 역학조사 결과,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결과와 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반려동물사료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과 위해성 평가 및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사료를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계획 및 회수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를 생산·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제 정 안

- 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
는 위해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검사기관·검사방법 및 검사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실시
하여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자는 그 검사결과를 사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수, 생산·판매금지, 표시기
준 설정 등 안전조치의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
- ⑤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은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급식 후
이상 증상이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이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위해요소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¹¹⁾, 반려동물사료만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위해 예방 및 긴급 대응 체계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려동물은 스스로 질병이나 이상 반응을 인지하거나 회피하기 어려
우며, 보호자의 관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사후 조
치보다는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이 특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서 규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요건은 법적 개념이 모호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고,

11)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3조(사료의 표시 사항),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명확한 위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판매 금지나 회수 명령을 발동할 경우, 시장 혼란 및 기업 활동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5조¹²⁾ 등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한하여 회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은 그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또한, 회수·공표 등의 행정조치가 사후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업자의 명예와 영업 신뢰를 회복할 절차가 부재하다는 점도 법적 공백으로 지적됨. 따라서 역학조사나 위해성 평가 결과, 반려동물사료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표하여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함.

아울러, 위반사실 공표(안 제9조제5항)와 회수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역시 위해 정도, 위반의 고의성,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해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위해 발생 우려’ 개념이 과도하게 포괄적일 경우 식품안전법령보다 강한

12)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법령등으로 정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조치 가능(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등). 즉 식품의 경우, ^①법 위반 사실은 이미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②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수조치 등 행정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본 제정안의 경우 이같은 제한 없이 ‘위해가 발생할 우려’라고 두어 식품의 경우보다 더 강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조치의 발동 요건과 정보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6) 반려동물사료 위해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체계 마련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해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의 생산·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추적조사, 사료 섭취 이력 및 건강 상태 등을 분석하는 역학조사, 필요 시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여 원인을 직접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 정 안
제13조(추적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반려동물사료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이 있는 때에는 합동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기록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는 반려동물의 섭취 이력, 건강 상태, 증상, 진료기록, 사료성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포함하고, 그 결과는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수의사, 관련 전문가, 동물병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 관계 기관 및 유관 단체에 공개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제 정 안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역학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검안·해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반려동물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안을 우선 실시하되, 검안만으로는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급식 후 이상 증상으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체의 검안 또는 해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검안 또는 해부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안 또는 해부를 하려면 미리 반려동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이나 긴급한 사정 등으로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위생시험소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안 또는 해부 이후 사체의 처리는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방안을 설명하고 소유자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안·해부와 이에 수반되는 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검안·해부 절차, 사체의 처리, 비용 지원 범위와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려동물 사료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집단 폐사, 질병 또는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사료의 추적·분석 및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다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업계 및 전문가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체적 실행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사 및 검안 절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의 경우 기존 법령과의 중복 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특히,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록·보관 의무는 이미 「사료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내용이 규정¹³⁾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다시 위임해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임.

아울러, 조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분석기관, 과학적 기준, 임상자료 등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⁴⁾.

13) 「사료관리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보관 의무,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사료제조업자등이 비치하여야 하는 관계 장부(배합사료 제조업자의 경우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자가품질검사대장, 등록제품배합율표 등)

14) 안 제15조는 검안·해부명령의 수행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위생시험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3조(추적조사)와 안 제14조(역학조사)는 수행주체를 “관계행정기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조사 주관기관, 권한 배분 등이 불명확함.

(7)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안전정보, 피해사례, 긴급대응방안 및 관련 정책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일반 국민과 관계 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안전정보, 피해사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집행 및 긴급대응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공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제보 중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사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보와 제18조에 따른 피해사례 및 피해구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사료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사례, 피해 구제 현황, 정부의 대응 정책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체계가 미비하여, 소비자가 사료 관련 위해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거나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 위해 예방과 신속 대응, 정보 공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는 음해성 정보로 인하여 사업자 등의 피해가 없도록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사료 안전 관련 정보 수집·제공 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기존 공공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및 행정 효율성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검증되지 않은 신고나 제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시장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 확보, 공개 기준, 운영 주체 및 위탁기관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8) 소비자 피해 보호 및 지원 등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고, 위해사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8조).

제 정 안
제17조(소비자 및 사업자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반려동물사료의 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교육, 위해정보 신고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검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반려동물사료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 피해 보호 및 구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 우려가 있는 반려동물사료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을 활용한 피해사례의 수집, 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해사료 섭취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피해구제 절차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려동물사료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위해사료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에 협조하고,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피해구제 절차 운영 및 연계를 위하여 소비자단체, 분쟁조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정보의 수집 및 관리, 연계 절차,

제 정 안

소비자 고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재산적 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애착 대상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가 단순한 재산적 손해를 넘어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와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반려동물사료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위해 발생 시 정부와 사업자의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안 제18조제6항에서 ‘재산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정서적 애착의 대상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되어있는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항¹⁵⁾에 대해 우회

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임. [의안번호 22003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외 12인, [의안번호 221124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 외 11인 등

(9) 권한 위임 및 위탁기관의 공무원 의제 규정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은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권한 및 위탁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0조).

제 정 안
제19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반려동물사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체계가 신설될 경우, 사료의 위해성 대응(제13조~제15조), 정보망 구축 및 운영(제16조), 소비자 피해조사(제18조), 기술지원 및 연구사업 수행(제17조제3항) 등은 전문성과 지속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위임·위탁 근거 마련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아울러, 위탁 업무의 성격과 범위, 수탁기관의 수행 역량 등에 따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역량 격차나 업무 미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2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도·감독 및 위탁취소 절차를 명문화한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 보완 장치로 보임.

(10) 벌칙 및 과태료

제정안은 반려동물사료의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판매 금지 위반, 회수명령 불이행, 검사명령 또는 추적조사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허위표시, 허위자료 제출, 소비자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제 정 안
제21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판매 금지된 반려동물사료를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검사명령·추적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안전정보망 신고·제보와 관련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정안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은 반려동물사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법령 준수 의무 강화 및 행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안전관리체계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

수적 조치로 평가됨. 특히, 생산·판매 금지나 회수명령 위반과 같은 행위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정안의 벌칙 수준은 전체 법체계 내에서 비례성과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사료관리법」에서는 위해 우려 사료 판매 등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¹⁶⁾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생산·판매 금지 사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형량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령과의 형평성 및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25

16) 「사료관리법」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참고1

반려동물사료 품질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관리체계

관리대상		관리기관	법적근거 (사료관리법)	주요기능
사료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법제2조, 제5조	수급조절, 가격안정, 품질, 안정성, 자원개발 및 재정지원
		승인받은 사료조절단체	법제2조제3항	수급조절
수입추천		농협중앙회, 사료관련단체	법제6조제2항	양허세율 수입추천
제조업등록·취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	법제8조제1항 내지 제7항, 제25조	제조업등록, 변경신고, 휴폐업 및 등록취소
			법제9조	제조업 승계
사료안전관리인		시·도지사	법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 지도, 감독
사료공정설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11조	사료공정등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고시 및 법령관리
성분등록·취소		시·도지사	법제12조	사료 성분등록 및 취소
HACCP		위탁받은 HACCP인증원	법제16조	HACCP 지정, 관리 및 교육등
사료검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위임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제16조, 제21조	사료검사(제조업등록, 표시사항, 성분등록,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 금지 등) 지도, 단속
사료검정기관	수입신고 의뢰시료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 한국사료협회/사료기술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사료연구소	법제19조	수입신고 수리 / 수입신고 시료분석
		농림축산식품부	법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취소
	검사기관 의뢰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법제23조	사료 재검사 또는 재검정 시료분석(2차검사)
사료시험인정기관		농협 축산연구원, 대학 등 총 17개 사료시험인정기관	법제21조	자가품질검사 시료분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제22조, 제22조의2	사료시험인정기관 지정·취소
폐기조치등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 위임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제24조, 제24조의2	사료의 회수, 폐기, 위해 제거 등 조치 및 공표
		시·도지사 위임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법제26조	과징금 부과처분
사료관리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법제27조의2	사료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한국농수산물대학교. 2024.9.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연구. p 216